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신종갑 의원)

의 안 번 호	16-9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10. 19.

발 의 자 : 신종갑·강희향·김영미

김효식·문정애·서종수

유호렬·이학래(8명)

1. 제정이유

국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「대한민국 국기법」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국기 선양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국기법」

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6. 10. 20. ~ 2016. 10. 24.(의견제출 없음)

나. 조례안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 게양일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대한민국의 국기"(이하 "국기"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.
2. "국기 선양"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 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4조(국기의 게양일 등)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2. 마포구민의 날(매년 10월 23일)
3. 그 밖에 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

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.

제5조(국기선양사업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국기 계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6조(국기계양대 설치 권고 등)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계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계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7조(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